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1. 일 시 : 2021년 9월 28(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박수원, 신상진, 권석진, 조하연, 김민수 (8명)

■ 불참의원 : 이경훈, 김태훈, 고민석 (3명)

4. 안 건

가. 규정 개정(안)

안 건		비고
1.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2.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3.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4.	전과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안)	전면 개정
6.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7.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8.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개정(안)	
9.	창업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위원장이 성원 확인 후(총원 11명 중 8명 참석) 개회를 선언하다.

【규정 개정】

1)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3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②항 : 제11장 신설로 삭제
 - '제11장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설 : 제69조~제73조
 - 제11장 기 타 : 제11장 신설에 따른 '장' 및 '조' 개정

▪ 김진곤 의장은 이번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통일적 기준 제시에 따른 반영으로, 우리 대학 자체 개정 사항을 위주로 검토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70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①항의 세부적인 내용(대학원생과 학부생 관련)과 의미를 묻고 이에 따른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타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현실에 맞는지를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요청하다. 이를 전제로 우리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조건부 의결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70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③항의 내용중 "실습세미나 교수, 실습기관 기관장의" 표현상 불명확성과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명확한 절차적인 표현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김민수 의원은 제70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④항 "이 경우 실습생의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중도 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부분은 불필요한 서술로 표현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위해 삭제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과 김민수 의원은 제72조(기관실습 운영 기준 등) ④항"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부분에서 "이튿날"을 "익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다.

▪ 이건영 의원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내용과 소급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묻고,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운영팀장이 현재 진행 상황과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제70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①항 규정은 타 대학 사례와 현황을 추가 검토한 결과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70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④항 "이 경우 실습생의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중도 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부분은 삭제하기로 의결하다.
- 제72조(기관실습 운영 기준 등) ④항 "이튿날"을 "익일"로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2)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세부전공 변경기회를 1회->2회로 확대
- 4학년 진급 예정자 전과신청 확대

▪ 조하연 의원은 세부전공 변경과 전과 지원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제시하다.

▪ 조하연 의원은 4학년 전과의 경우의 1년내 졸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 졸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묻고 교육지원팀장은 학생들의 기회부여 측면으로 전과한 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또한 전과전 수강신청기회 확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현황과 대책을 묻고 교육지원팀장은 현재 여석관련 현황과 향후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전과했을 경우 학번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묻고, 전과전 수강기회 및 숙려기간 부여 등 학생의 기회보장 확대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전과 제도 악용 가능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육지원팀장은 학과 내규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과 조하연 의원은 전과 제도의 활성화와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공지와 홍보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원 전원은 표현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위해 **제21조의 2(전공변경)의 “입학 당시 모집단위내”에서 “입학 당시”를 삭제하기로 동의하다.**

- 의원 전원은 제21조의 4(전과) 표현을 제21조의 2(전공변경)과의 통일적 서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 **의결내용**

- **제21조의 2(전공변경)의 “입학 당시 모집단위내”에서 “입학 당시”를 삭제하기로 수정 가결하다.**

- **제21조의 4(전과)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제21조의 4(전과) 총장은 전과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세부전공변경기회를 1회->2회로 확대

- 4학년 진급 예정자 전과신청 확대

- 박수원 의원은 제30조의 2(전공변경) 2 서술부분은 전과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필요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진곤 의장은 추후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상정 및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 김진곤 의장은 제30조의 3(전과) “본교는 전과를 할 수 있고”에서 “본교”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결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제30조의 3(전과) 학생은 전과를 할 수 있고 전과신청 대상(학년)은 2학년 이상 진급(예정)자로 한다. 전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과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4) 전과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4학년 진급 예정자 전과신청 확대
 - 2학기 신입학자 및 월반복학자 전과 허용
 - 전과지원자격 완화(지원자격 중 성적 평점평균 하향조정)
 - 전과총괄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해당부서 팀장) 추가
- 김진곤 의장은 제5조(지원자격 및 횟수) ①항 2 아래 병렬 서술 부분 각 내용을 “가” “나” “다”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동의하다.
 - 김진곤 의장과 박수원 의원은 평점 평균과 평량 평균은 의미가 명확히 다르며, 제5조(지원자격 및 횟수) ①항 “3. 성적 평점 평균이 2.5이상(예정)인자”에서 어느 표현이 맞는지 추가 검토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서술하여줄 것을 요청하다.
 - 박수원 의원은 제12조(전과총괄심의위원회) ①항 2의 위원 서술 순서를 정확하게 서술해줄 것을 요청하다.

▪ 의결내용

- 제5조(지원자격 및 횟수) ①항 2의 표현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2. 학년별 전과는 학칙 제61조(수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2학년 전과는 3학기 이하 재학하고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자
- 나. 3학년 전과는 5학기 이하 재학하고 2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자
- 다. 4학년 전과는 7학기 이하 재학하고 3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자

- 제5조(지원자격 및 횟수) ①항 3의 “평점 평균”은 검토 결과 “평량 평균”으로 수정 가결하다.

3. 성적 평량 평균이 2.5이상(예정)인 자

- 제12조(전과총괄심의위원회) ①항 2의 표현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2. 위원 : 인재니움학부대학장, 입학처장, 교무부처장,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교육지원팀장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안)

- 인재개발원장과 현장실습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기반한 본교 규정 전면 개정

- 수업방식 구분
- 수강신청 의무화 및 교과목 개설
- 국가재난에 대비한 조치방법 수립

▪ 박수원 의원은 현장실습의 학생 선택권 약화, 참여 기업의 어려운 측면, 수강 신청시 졸업가능 여부 예측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곤 의장은 시행 초기 학생과 기업의 부담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다.

▪ 박수원 의원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고 이에 현장실습지원팀장은 공시반영 여부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천성오 의원은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되는지와 현재까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고 이에 현장실습지원팀장은 기업 안내가 충분히 되고 있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이건영 의원은 이번 전면 개정안은 개정 명칭이 변경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사항의 이력관리 필요성(현재 전면 개정의 경우, 이전 규정의 내용 등을 삭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변경사항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6)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국제교류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협정에 의한 공동 또는 복수학위제 학생의 교류기간은 각 협정 내용에 따름
- 근거 내규 변경 등에 따른 규정 내용 현실화
-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7)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국제교류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위원회 기능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위원 구성, 임기, 기타 내규 내용 현실화

▪ 의원 전원은 과거 일본식 표현방식인 "본"을 수정 또는 삭제하기로 동의하며 제4조(구성) ③ 과 제6조(주관부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 **의결내용**

- **제4조(구성) ③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제4조(구성) ③ 위원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대외국제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국제교류팀장은 당연직이다.

- **제6조(주관부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조(주관부서)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국제교류팀으로 하며, 국제교류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개정(안)

- MOOC센터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명 및 대여 품목 및 대여 시간 수정
 - 예약 조항 삭제 및 대여 기간 및 연체료 조항 신설
- 의원 전원은 제4조(대여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의 센터장 재량과 대여 횟수 표현 부분의 명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동의하다.
- 조하연 의원은 외국인 학생이 기자재를 대여 신청할 경우 신분 확인 절차에 대해 묻고 이에 MOOC센터 차장이 답하다.
- 박수원 의원과 조하연 의원은 제5조(대여신청)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종류와 관련하여 학생증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묻고 이에 MOOC센터 차장이 현행 절차와 시스템을 부연 설명하며 답하다.
- 의원 전원은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제5조(대여신청) ① “교육용 기자재 대여 시에는 개인정보동의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의 표현을 “교육용 기자재 대여 시에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제출과 학생증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제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동의하다.
- 박수원 의원은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7조(연체료) ② “분실로 간주하여 변상 처리한다”의 표현을 “분실로 간주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의원 전원은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제8조(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2. “교육용 기자재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한 제품과 동일한 기종 또는 동종 이상의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의 표현을 “교육용 기자재를 분실한 자는 분실한 제품과 동일한 기종 또는 동종 이상의 새 제품을 구입하여 변상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제4조(대여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제4조(대여 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 교육용 기자재의 대여 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는 다음과 같다.

1. 대여 수량은 1인 1개(기)로 한다.
2. 대여 기간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고, 대여 마지막 날 17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여 가능 시간은 9시-17시(하계·동계방학: 10시-15시)로 한다.(17:00-17:30 대여 마감, 교육용기자재 점검)
4. 대여료는 선불로 하되,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5. 대여는 최대 7박 8일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4회 가능하다.

- 제5조(대여신청) ①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제5조(대여신청) ① 교육용 기자재 대여 시에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제출과 학생증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연체료) ②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제7조(연체료) ② 연체료는 최대 30일까지 누적 부과하며, 연체일수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단, 연체일수 60일을 초과할 경우 분실로 간주한다.

- 제8조(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2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제8조(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2. 교육용 기자재를 분실한 자는 분실한 제품과 동일한 기종 또는 동종 이상의 새 제품을 구입하여 변상해야 한다.

9) 창업 규정 개정(안)

▪ 산학사업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창업소관 위원회 변경사항(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 반영

- 교원창업 자격요건 완화(재직 3년 이상 → 삭제)

▪ 의원 전원은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제4조(창업승인) ① “교원 창업의 승인은”을 “교원 창업은”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원 전원은 표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제12조(중요사항 변경통보)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제4조(창업승인) ① “교원 창업의 승인은”을 “교원 창업은”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 제12조(중요사항 변경통보)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다.

10) 기타 의결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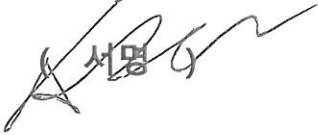






▪ 이견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부여 비율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다. 이를 위해 교무처에 타 대학 현황을 조사하여 개정 검토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다.

6. 폐회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9월 28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김 진 곤	(서명) 
부 의 장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이 건 영	(서명) 
평 의 원	박 수 원	(서명) 
평 의 원	이 경 훈	(서명)
평 의 원	신 상 진	(서명) 
평 의 원	김 태 훈	(서명)
평 의 원	권 석 진	(서명) 
평 의 원	조 하 연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